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428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0452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25,154원 및 그 중 26,052,335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1. 3. 25.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6행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 그 하단에 나오는 각 “B”를 “H”로 각 고치고, 제2항에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2017년 연말정산 피고 소득세 등(합 3,272,2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금원은 피고의 급여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으로 연말 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H로부터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이는 개인사용 용도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근로소득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2,956,140원, 지방소득세 295,550원 합 3,251,69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은 피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원이다. 한편 H가 대출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3,272,200과 일부 차액 20,510원(3,272,200원 - 3,251,690원)이 발생하지만, 이는 기납부세액에 비해 결정세액(소득세 17,673원, 지방소득세 1,767원)이 지극히 적어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착오를 일으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금을 재단보증서 담보대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법인격남용에 따른 피고의 책임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는 자본금 40,000,000원의 소기업에 불과하고, 피고가 H의 유일한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1인 이사 체제로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H의 운영자금대출금을 유용하는 등으로 회사를 부실화 시킨 점에 비추어, H는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H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자본금 4,000만원의 소기업이고, 피고가 단독주주, 단독 사내이사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H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1인회사를 넘어 피고의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주진암, 판사 이정형